

##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상품요약서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가. 가입자격제한

| 주 택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
| 1)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br>(미등재 합법주택은 가능)<br>2)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br>3) 빈 집 | 1)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설계서』 규격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br>2)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중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7-64, 제2010-128호 및 제2014-78호’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br>3)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br>4) 영농목적(작물재배용)이 아닌 온실<br><br>단,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온실이라도 공인기관(농업공학연구소, 구조사무소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구조해석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은 제외하지 않으며, 구조 인증 시 3형으로 분류한다. |

#### 나.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소멸성 순수보장형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본 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제3항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대상물(온실)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은 온실 시설물만 보장합니다. (**※농작물 및 부대시설 보장 제외**)

## 2. 보상하는 손해, 지급보험금 및 지급제한사항

### 가.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 ②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표하는 경우
  2. 기상특보 발표는 되지 않았으나 연접한 지역(시·군)에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주택

○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주계약)

| 피해유형   |                       |    | 보상금액                    |
|--------|-----------------------|----|-------------------------|
|        |                       |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100% 보상형 |
| 전파     | 50㎡ 이하                | 단독 | 5,000만원                 |
|        |                       | 공동 | 4,500만원                 |
|        | 50㎡ 초과                | 단독 | 주택면적(㎡) × 100만원         |
|        |                       | 공동 | 주택면적(㎡) × 90만원          |
| 전반파    |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
| 반파     |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 소파     | 균열길이 2m이상 ~ 연면적의 5%미만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
|        | 연면적의 5%이상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0%      |
|        | 연면적의 10%이상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5%      |
|        | 연면적의 15%이상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0%      |
|        | 연면적의 20%이상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지붕 재파손 | 2㎡ 이상~6㎡ 미만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
|        | 6㎡ 이상~10㎡ 미만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0%      |
|        | 10㎡ 이상~15㎡ 미만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5%      |
|        | 15㎡ 이상(동일)            |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침수     | 50㎡ 이하                |    | 800만원                   |
|        | 50㎡ 초과                |    | 350만원+[9만원×주택면적(㎡)]     |

○ 선택 담보 및 보상내용(특별약관)

| 구 분                   | 보상내용                                                                                                                                                                                                                                                                 |
|-----------------------|----------------------------------------------------------------------------------------------------------------------------------------------------------------------------------------------------------------------------------------------------------------------|
| 동산<br>특별약관            | <b>【전파】</b><br>특약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br><b>【전반파】</b><br>특약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지급<br><b>【반파】</b><br>특약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br><b>【침수】</b><br>주택면적 50㎡ 이하 : 600만원<br>주택면적 50㎡ 초과 : 262.5만원+[67.5천원×주택면적(㎡)]<br>※ 세부 내용은 보험약관 참조 |
| 주택침수<br>보험금확장<br>특별약관 | 주택의 침수손해는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보험금을 지급함.<br>주택면적 50㎡ 이하 : 800만원<br>주택면적 50㎡ 초과 : 350만원+[9만원×주택면적(㎡)]                                                                                                                                           |

- 온실

○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주계약)

| 피해유형    | 보상금액                                     |                              |                              |
|---------|------------------------------------------|------------------------------|------------------------------|
|         | 시설물 복구비<br>기준액 대비<br>70% 보상형             | 시설물 복구비<br>기준액 대비<br>80% 보상형 | 시설물 복구비<br>기준액 대비<br>90% 보상형 |
| 전파      | 기준단가 × 70% ×<br>총 피해면적                   | 기준단가 × 80% ×<br>총 피해면적       | 기준단가 × 90% ×<br>총 피해면적       |
| 전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                              |                              |
| 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                              |
| 소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은 동 비용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함 |                              |                              |

○ 선택 담보 및 보상내용(특별약관)

| 구 분              | 보 상 내 용                                             |
|------------------|-----------------------------------------------------|
| 단순비닐파손<br>특별약관   |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복구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0%한도로 보상 |
| 하천고수부지 내에<br>설치된 |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                          |                                         |
|--------------------------|-----------------------------------------|
| 온실의 강풍·대설만의<br>손해보상 특별약관 |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
|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br>특별약관      | 온실의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br>온실과 동일함 |

#### 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4.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7.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서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보험료 산출 예시

| 구 분        | 주 택                                                                                                                             | 온 실                                                                                                                                                        |
|------------|---------------------------------------------------------------------------------------------------------------------------------|------------------------------------------------------------------------------------------------------------------------------------------------------------|
| 가입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서울 강동구</li> <li>- 가입면적: 60m<sup>2</sup> (단독주택)</li> <li>- 보험가입금액비율: 9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울산 울주군</li> <li>- 가입면적: 1,000m<sup>2</sup><br/>(온실분류: 2형/<br/>철재파이프하우스A형)</li> <li>- 보험가입금액비율: 90%</li> </ul> |
| 주민 부담분 보험료 | 15,400원(총 보험료의 45%)                                                                                                             | 26,100원 (총 보험료의 30%)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경우 같은 조건이라도 지역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는 KB손해보험 지점을 통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보험료 산출기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7. 기타 알아 두실 사항

Q)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A) 주택이라 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빈집 또는 부속 건물은 제외됩니다.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인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Q) 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A)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2년/3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설·강풍에 대해 동절기(11월~3월)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